

의안번호	제42호
의결 년월일	2026. 4. 22. (제337회)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금산군수
제출년월일	2026. 4. 10.

#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제출년월일 : 2026. 4. 10.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 1. 제정이유

- 지역연고축구단(금산인삼FC)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금산군민축구단(금산인삼FC)”의 정의 명시  
(안 제1조 및 제2조)
- 축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금산군수의 책무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  
(안 제3조 및 제4조)
- 안정적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단 숙소 및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 경기 및 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권 부여  
(안 제6조 및 제7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예산조치 : 연간 200백만원(2026년 기준)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4708)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4734)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13148)
  - 입법예고(2026. 3. 20. ~ 2026. 4. 9.) : 의견없음

##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산군민축구단"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금산인삼에프씨를 말하며 금산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금산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금산군민축구단 운영 지원)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산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 사업

2.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과 숙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금산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군 종합운동장 및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금산군민축구단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 **비용추계서** (제4조제2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연봉계약선수 확보·유지 등 인건비성 지출 필요(창단 승인 기준\* )  
\* 연봉선수 6명이상 영입(최저연봉 2,200만원 기준)

#### 나. 관련 조문

-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으로 함.
- K4 축구리그 창단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선수 6명을 전제로 인건비를 편성함.
- 본 비용 추계는 조례(안) 제3조에 따른 ‘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물가상승률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 동일 수준으로 추계함(예산편성 시 조정 가능).

####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한 군비가 소요됨.
- 산출기초 25,000,000원×8명(감독1,코치1,선수6) = 금200,000,000원

####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본예산 편성 (군비 100%)

### 3. 작성자

관광문화체육과장 박선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금산군민축구단 운영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 2〉

## 관 계 법 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

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